# 2026년 2월 노인의 권리에 관한 정부간 실무그룹(IGWG) 조직회의 관련 유럽 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ENNHRI) 성명

# ENNHRI Statement in regard of the organizational meeting of the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 (IGWG) in February 2026

2026년 2월에 개최되는 노인의 권리에 관한 정부간 실무그룹(IGWG) 조직 회의는 성안 과정의 포용성, 정당성 및 효과성을 결정짓는 작업 방식을 확립할 결정적 기회이다. 유럽 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ENNHRI)는 유엔(UN) 회원국들이 성안 과정의 모든 단계에 걸쳐 노인, 노인 대표 단체,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 및 비정부기구의 의미 있고 완전하며 평등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옹호할 것을 촉구한다.

## 주요 권고사항

1. 노인, 노인 대표 단체, 국가인권기구(NHRI) 및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IGWG 회기 참가를 보장하고, 서면 의견 제출 및 구두 발언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IGWG는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작업 방식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3. 노인 및 노인 대표 단체가 IGWG 회기에 효과적으로 원격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4. IGWG가 작성하거나 배포하는 모든 정보와 문서화 자료는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5. IGWG가 작성하거나 IGWG에 제출된 모든 문서 및 개방형 고령화 실무그룹(OEWG-A)의 모든 문서에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 플랫폼은 IGWG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6. IGWG가 성안할 문서는 교차성 접근법을 채택하고 취약한 상황에 처한 노인의 권리와 삶의 경험을 명시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7. 성안될 문서는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을 반영해야 하며, 노인과 관련된 모든 인권의 범주를 포괄해야 한다.

## 배경: ENNHRI 및 NHRI

유럽 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는 유럽 전역의 51개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 기관으로서, 유엔 파리원칙(Paris Principles) 및 유럽이사회 장관위원회 권고 2021/1에 따라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들 기관은 국제 인권 기준과 국내적 이행 사이를 연결하는 독특한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유

럽 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는 노인 인권 권리 보장에 오랫동안 기여해 왔으며, 이 주제에 관한 실무그룹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유럽 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는 AGE Platform Europe 및 Equinet과 협력하여 2025년 2월 유럽 내 노인 인권 보호 강화 및 연령 차별 대응에 관한 웹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해당 웹세미나의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 노인의 권리에 관한 개방형 정부간 실무그룹(IGWG)

2025년 4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노인의 인권 증진 및 보호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를 성안하는 권한을 가진 노인의 권리에 관한 개방형 정부간 실무그룹(IGWG)을 설립하는 결의안 A/HRC/RES/58/13을 채택하였다. 본 결의안은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포르투갈, 몰도바 공화국,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우크라이나 등 유럽 회원국을 포함한 40개 이상의 유엔 회원국에 의해 발의되었으며(결의안 A/HRC/58/L.24/Rev.1), 80개 이상의 유엔 회원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유럽 국가인권기구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인권기구가 본 결의안 채택을 위해 적극적으로 옹호 활동을 펼쳤다.

IGWG의 설립은 뉴욕에서 추진된 기존 프로세스의 연장선상에 있다. 2010년,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된 OEWG-A가 설립되어 기존 노인 인권 보호 국제 프레임워크를 평가하고, 잠재적 공백을 도출하며, 이에 대한 최선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였다. 2024년 제14차 최종 회기에서 OEWG-A는 국제 인권 프레임워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련의 권고사항(국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 제정 포함)을 담은 결정 14/1 (A/AC.278/2024/2, para. 28)을 채택하였다. 2024년 8월 결의안 78/324를 통해 유엔 총회는 OEWG-A가 업무를 완료했음을 확인하고 유엔 기관들에 관련 권고사항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2024년 12월 결의안 79/147로 총회는 OEWG-A의 임기를 종료하였다. 유럽 국가인권기구들 및 시민사회단체(CSO)들은 OEWG-A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전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새 협약의 가치

오늘날 노인은 기존 인권 보호 체계 내에서 제한적이고 불충분한 관심만을 받고 있다. 그 결과, 현행 프레임워크에 의해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는 다층적 취약성에 직면해 있다. 개정 유럽사회헌장 및 유럽이사회 권고 CM/Rec(2014)2와 같은 문서들이 노인의 특정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대한 보호의 공백이 존재한다. 노

인은 연령 차별, 불충분한 사회적 보호, 폭력 및 방임, 보건 의료 접근의 장벽, 자율성과 존엄성에 대한 위협 등 수많은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유럽 경제사회위원회(EESC)에 따르면 유럽 노인의 약 42%가 자국 내에서, 특히 직장에서 연령 차별이 만연하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주의와 연령 차별은 추가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AGE Barometer'(AGE Platform Europe의 연례 평가)는 EU 회원국 전반에 걸쳐 노인이 겪는 지속적인 불평등, 배제, 장벽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독자적인 전용 협약은 노인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노인을 독립적인 권리 주체로 인정하며, 노년기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할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포함한 기존 인권 조약 및 기준과의 연계를 통해, 이러한 문서는 현행 인권 프레임워크 내 보호의 공백을 메우고 노인의 다양한 삶의 현실을 더욱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권고사항

**1. 의미 있는 참여**

노인, 노인 대표 단체, 시민사회단체 및 국가인권기구들은 IGWG 과정 동안 서면 성명 제출, 구두 발언, 패널 토론 참여 기회를 제공받는 등 의미 있고 평등하며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들은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임무에 따라 IGWG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

IGWG 내 노인들의 대표는 필수적이며, 이 이질적인 집단이 가지는 다양성을 완전하게 반영해야 한다. 의미 있는 참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인권일 뿐만 아니라, 성안될 문서의 정당성, 적합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문서 성안 시 기존의 인권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는 동시에, 노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할 자격이 있는 독립적인 권리 주체임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작업 방식**

모든 이해관계자의 효과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며 투명한 작업 방식이 필수적이다. 이는 의제 및 문서의 적시 배포, 서면 및 구두 의견 제출 기회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그리고 국가인권기구들, 시민사회단체들, 노인의 기여가 IGWG 작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투명한 보고를 포함한다.

**3.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병행) 방식**

일부 노인들에게는 제네바 현장 방문이 어려울 수 있다. IGWG 참여가 대면 참석으로만 제한될 경우, 의미 있는 참여권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인 및 노인 대표

단체에 원격 참여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하이브리드 참여 전략은 노인의 다양한 거주 환경과 참여 기회를 더욱 제한할 수 있는 교차적 차별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4. 접근 가능한 정보**

모든 노인은 IGWG가 작성하거나 배포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화면 읽기 프로그램(screen-reader) 호환 문서, 읽기 쉬운 형식(easy-to-read), 수어 통역 등을 포함하여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모든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 접근성에 대한 지침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을 위한 유럽 표준 및 유럽 접근성 법안(European Accessibility Act)에 따라 마련된 조치를 참고할 수 있다.

**5. 온라인 플랫폼**

OEWG-A 관행과 마찬가지로, IGWG에 제출되거나 IGWG가 작성한 모든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OEWG-A가 작성하고 제출받은 모든 문서 역시 IGWG 작업의 중요한 기반이 되므로 본 플랫폼을 통해 접근 가능해야 한다. OEWG-A 때와는 달리, 이 플랫폼은 IGWG의 임기가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플랫폼은 사용자 친화적이고 잘 구조화되어 있으며 검색이 가능해야 하고, 노인들이 플랫폼의 설계 및 이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6. 교차적 접근법**

IGWG가 성안할 문서는 교차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취약한 상황에 처한 노인의 삶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고령 여성, 장애 노인, 이주민 및 난민 노인, 원주민 노인, 소수 민족 노인, LGBTQ+ 노인, 국내 실향민 노인 등 노년기의 차별이 흔히 교차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본 문서는 국가가 이러한 다층적이고 교차적인 차별 형태를 식별하고 대응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나아가 당사자들의 삶의 현실에 기반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서의 이행 및 모니터링 과정에 이들 집단의 의미 있는 참여를 요구해야 한다.

**7. 협약의 포괄 범위**

IGWG가 성안할 문서는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을 반영해야 하며, 노인의 삶의 현실을 반영하는 인권의 모든 범주를 포괄해야 한다. 포괄 범위에는 사법 접근성, 접근성, 적절한 생활 수준, 연령주의 및 연령 차별, 자율성과 독립성, 디지털화, 경제적 보장, 교육 및 역량 강화, 평생학습, 보건, 주거, 장기 요양 및 완화 의료, 사회 참여, 사회적 포용, 사회적 보호 및 사회보장, 노인 학대 및 폭력, 그리고 직장 생활 등에 관한 이슈가 포함된다.